



제330회 임시회
2014. 6. 1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3.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를 억제하고,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및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안 제3조)
 - 당연직 위원 9명을 포함 20명 이내(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위원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안 제4조)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센터 설치(안 제8조)
-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행정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 삭제(안 부칙)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규제관련 업무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2014.4.18.)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현재, 「행정규제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규제의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에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 등으로 제정하여 설치·운영해 오고 있음.
- 동 조례안은
 - 규제업무에 대한 심의주체를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 규제의 중점방향을 규제의 등록·공표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능 확보로 변경하였으며,
 - 규제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도 규제정책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적, 법리적 문제 없음.

-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행정규제의 심사·조정 기능을 대행하고 있던 '도정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 타시도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 현황

구 분	제정일	비 고	구분	제정일	비 고
서 울	-	* 구별로 제정	경 기	03. 06. 30	
부 산	98. 12. 31		강 원	07. 11. 09	
대 구	99. 01. 16		충 남	98. 09. 05	
인 천	98. 08. 10		전 북	07. 02. 02	
광 주	91. 01. 15		전 남	99. 12. 28	
대 전	98. 11. 17		경 북	91. 10. 29	* 훈령(규정)
울 산	98. 12. 30		경 남	99. 03. 25	
세 종	12. 11. 12		제 주	06. 01. 11	